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140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856	**세목**	종합소득세
생산일자	2026. 07. 16.	**귀속연도**	2026
제목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사업포괄 양도시 지급받는 영업권 대가의 소득구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요지	유형자산에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업 전체를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 하는 경우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 및 구독자 수 등 영업상의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4.10.01.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 ‘19.1.1. 컴퓨터 조립, 부품 리뷰, 컴퓨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별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쟁점사업)을 하고 사업 영위 중

- 쟁점사업 수입금은 유튜브 플랫폼(구글)으로부터 받는 애드센스 수익(유튜

브 플랫폼 광고수익 배분)과 국내업체로부터 받은 광고·협찬비임

◯ 신청인은 '25.8.25. 이하 양수법인을 설립하고 '26.2.5. 양수법인과 쟁점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 재고자산 등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양도일('26.8.31.)기준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 결정(감정기준일 '26.8.31.)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없음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일부발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제3조 [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26년 8월 31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재고자산 등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양도일인 2026.8.31. 기준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2. 질의요지

◯ 쟁점사업 포괄양도 거래에서 영업권 양도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60%의 필요경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생략

7.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 26. 생략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

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 영업권의 범위 】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8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 방법】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